

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
관리번호

-

(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
[]기한 내 신고 []수정신고 []기한 후 신고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수 증 자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	③ 거 주 구 분	[] 거주자 [] 비거주자
	④ 주 소				⑤ 전자우편주소	
	⑥ 전화번호 (자 택)			(휴대전화)	⑦ 증여자와의 관계	증여자의 ()
증 여 자	⑧ 성 명		⑨ 주민등록번호		⑩ 증 여 일 자	
	⑪ 주 소				⑫ 전 화 번 호	(자 택) (휴대전화)
세 무 대 리 인	⑬ 성 명		⑭ 사업자등록번호		⑮ 관 리 번 호	
	⑯ 전화번호 (사무실)				(휴대전화)	

구 분			금 액	구 분		금 액
증여세 과세가액	창업자금 (「조세특례제한 법」 제30조의5)	⑰ 해당 증여재산 (부표 1 ⑯가액)		③① 신고불성실가산세		
		⑱ 가산 증여재산 (부표 1 ⑪가액)		③② 납부지연가산세		
	기업승계주식등 (「조세특례제한 법」 제30조의6)	⑲ 해당 증여재산 (부표 2 ⑫가액)		③③ 자진납부할 세액 (②⑦ - ②⑧ + ③① + ③②)		
		⑳ 가산 증여재산 (부표 2 ⑦가액)		납부방법	납부 및 신청일	
	㉑ 합 계[(①⑦ + ①⑧) 또는 (①⑨ + ②①)]					③④ 연부연납
㉒ 증여재산공제				현 금	③⑤ 분납	
㉓ 재해손실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4조)					③⑥ 신고납부	
㉔ 감정평가수수료			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
㉕ 과세표준 (②① - ②② - ②③ - ②④)						
㉖ 세율 (10%, 20%)						
㉗ 산출세액						
세액 공제	②⑧ 세액공제 합계(②⑨ + ③①)			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		
	②⑨ 납부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8조)					
		③① 외국납부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9조)			세무서장 귀하	

신고인 제출서류	1.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(부표 1) 1부 2.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.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등본 2.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,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1.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2.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☒ 표시합니다.
 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.
3. "⑦ 증여자와의 관계"란: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. [예시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: 자]
4. "⑬ 성명"부터 "⑯ 전화번호"란: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.
5. 거주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, 제30조의6 또는 제30조의7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6. "⑰"부터 "㉔"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(그 배우자를 포함)으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7. "㉔ 증여재산공제"란
 - 창업자금 과세특례: 5억원을 적용하되, ㉔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㉔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: 10억원을 적용하되, ㉔의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㉔의 금액을 적습니다.
8.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의 ㉔란의 금액이 50억원(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)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)의 ㉔란의 금액이 300억원(부모의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,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(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, 별지 제10호서식)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.
9. "㉔ 세율"란
 - 창업자금 과세특례: 10%를 적용합니다.
 -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: 10%를 적용하되,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
10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서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11. "㉔ 분납"란: 납부할 금액(㉔ - ㉔)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- 나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12. "㉔ 신고납부"란: 신고납부세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

관리번호

-

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가.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

① 재산구분 코 드	② 재 산 종 류 코 드	③ 소 재 지 · 법인명 등		④ 사업자등록 번호 (지 분)	⑤ 수 량 (면 적)	⑥ 단가	⑦ 평가가액	⑧ 평 가 기 준 코 드
		국외자산 여부	국외재산 국가명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		[]여 []부						

나.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

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	⑨ 해 당 증 여 재 산 가 액	
	⑩ 해 당 채 무 액	
	⑪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	
	⑫ 계 (⑨ - ⑩ + ⑪)	
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	⑬ 총한도액 (50억원 또는 100억원)	
	⑭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(= ⑪)	
	⑮ 계 (⑬ - ⑭)	
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	⑯ ⑫과 ⑮ 중 적은 금액 (다만, ⑫ < ⑬이면, ⑫ - ⑮의 금액)	
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(⑫ > ⑬ 해당 시에만 적용)	⑰ 증 여 재 산 가 액 (⑨ - ⑯)	
	⑱ 채 무 액 (= ⑩)	

첨부서류	증여재산 증명서류 [예: 주주(증권계좌)번호 및 잔고증명서, 예금통장 사본 등]
------	--

작성방법

1. "① 재산구분코드"란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재산구분	증여재산 (창업자금)	증여재산 (가업승계)	증여재산가산 (창업자금)	증여재산가산 (가업승계)
코드	A12	A13	A22	A23

2. "② 재산종류코드"란: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재산구분	현금	토지 I (순수토지)	토지 II [일반건물(07)의 부수토지]	개별주택 (부수토지 포함)	공동주택 (부수토지 포함)	오피스텔· 상업용건물 (부수토지 포함)	일반건물* (부수토지 제외)	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	유가증권 (상장)	유가증권 (비상장)	금융재산 (현금, 유가증권 제외)	기타재산**	가상자산	서화·골동품 등***
코드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	12	13	14

*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~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.

**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~11,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.

*** 서화·골동품 등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.

3. "③ 소재지·법인명 등"란: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.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☒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, 소재지·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.

가. 소재지를 적을 경우: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(예시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)을 적습니다.

나.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: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[예시: 보험금인 경우 □□생명 △△보험 / 유가증권인 경우 (주)○○건설]을 적습니다.

4. "④ 사업자등록번호(지분)"란: "② 재산종류"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,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(예시: 증여자가 보유한 50%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%로 기재)을 적습니다.

5. "⑧ 평가기준코드"란: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.

평가기준	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0조)	해당 재산의 감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0조)	해당 재산의 수용보상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0조)	해당 재산의 경매공매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0조)	유사재산의 매매거래액 등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0조)	현금 등 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0조)	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6조)	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61조부터 제65조)
코드	01	02	03	04	05	06	07	08

6. "⑩ 해당 채무액"란: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.

7. "⑪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"란: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(증여재산가액 - 채무액)을 적습니다.

8. "⑫ 계"의 금액이 50억원(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"⑰ 증여재산가액"과 "⑱ 채무액"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(별지 제10호 서식)의 "⑰ 증여재산가액" 또는 "⑳ 채무액"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.

관리번호

-

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

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		
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	② 총자산가액	
	사업무관 자산가액	㉠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해당자산
		㉡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
		㉢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
		㉣ 과 다 보 유 현 금
		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·채권 및 금융상품
	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	
④ 사업관련 자산가액 (② - ③)		
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(④ ÷ ②)		
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	⑥ 가업자산상당액 (① × ⑤)	
	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	
	⑧ 합계액 (⑥ + ⑦)	
과세특례 적용 한도 금액 계산	⑨ 총한도액 (※)	
	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(= ⑦)	
	⑪ 계 (⑨ - ⑩)	
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	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[다만, ⑧ < ⑨이면, (⑧ - ⑦)의 금액]	
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	⑬ 증여재산가액 (① - ⑫)	

※ 총한도액

가업영위기간	한도액
10년 이상 20년 미만	300억원
20년 이상 30년 미만	400억원
30년 이상	600억원

작성방법

- "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"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.
- "② 총자산가액"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-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㉠~㉤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"④ 사업관련 자산가액"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.
- "⑥ 가업자산상당액"란은 "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"에 "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"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.
- "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"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거주자가 수증한 주식등의 가액을 포함)을 적습니다.
- "⑬ 증여재산가액"의 금액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) "⑰ 증여 재산가액"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.
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3] 삭제 <2024. 3. 22.>